퇴직금등

[서울고등법원 2015. 9. 4. 2014나49083]



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】

【피고, 항소인】주식회사 발렌타인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) 화우 외 1인) 【제1심판결】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 9. 18. 선고 2013가합12940 판결

【변론종결】2015. 6. 5.

【주문】

1

- 1.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- 2.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'청구금액 합계'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표 '지연 손해금 기산일'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. 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'청구금액 합계'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표 '지연 손해금 기산일'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. 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'청구금액 합계'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표 '지연 손해금 기산일'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. 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1.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표 '청구금액 합계'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별표 '지연 손해금 기산일'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. 손해금 기산일'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2.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.

[이유]

11. 이 법원의 심판범위

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장·휴일·연차휴가근로 수당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, 제 1심 판결은 그 중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퇴직금과 연장·휴일·연차휴가근로 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,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중 제1심 판결이일부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.

2. 기초사실

가. 넥타이, 스카프(머플러), 가방 등 수입·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롯데백화점,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, 각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피고 회사가 수입·제조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,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,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'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'을 체결하면서, 각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 회사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.

나. 원고들은 별표 '업무개시일'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피고 회사와 '판매용역계약서'를 작성하고, 위 각 해당일 부터 위 각 백화점 내에서 피고 회사가 수입·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, 별표 '업무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종료일'란 기재 각 해당일에 판매 업무를 종료하였다.

[이유]

11. 이 법원의 심판범위

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및 연장·휴일·연차휴가근로 수당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, 제 1심 판결은 그 중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퇴직금과 연장·휴일·연차휴가근로 수당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였다.

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,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 중 제1심 판결이일부 인용한 부분에 한정된다.

2. 기초사실

가. 넥타이, 스카프(머플러), 가방 등 수입·제조·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는 롯데백화점, 신세계백화점 등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들과 사이에, 각 백화점 운영회사들이 피고 회사가 수입·제조한 물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, 운영하는 백화점에서 판매한 후, 그 판매 수익에서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'백화점 특약매입거래계약'을 체결하면서, 각 백화점 내에서 판매 업무를 수행할 인력은 피고 회사가 파견하기로 약정하였다.

나. 원고들은 별표 '업무개시일'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에 피고 회사와 '판매용역계약서'를 작성하고, 위 각 해당일 부터 위 각 백화점 내에서 피고 회사가 수입·제조한 물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, 별표 '업무종료일'란 기재 각 해당일에 판매 업무를 종료하였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